

ESG위원회 운영규정

에 경 산 업 주 식 회 사

제 정 : 2023년 05월 10일

제1차 개정 : 2025년 07월 31일

제2차 개정 : 2026년 03월 26일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에경산업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정관 제41조의1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구성, 운영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회사의 ESG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, 그 활동을 관리·감독·평가·검토한다.
- ② 위원장은 의결 또는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4조 (정의)

- ① '위원회'는 회사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ESG 관련 정책, 목표, 추진성과 등을 심의·의결하는 이사회 산하의 기관을 의미한다.
- ② 'ESG 관련 활동'은 회사 경영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고취하며, 환경/사회/지배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 내지 그 가능성을 줄이고 회사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지칭한다.

제2장 구 성

제5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

제6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별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 (위원)

- ①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독립이사 중에서 선정되며 각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심의·의결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/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 또는 독립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,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장 회 의

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,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최소 24 시간 전까지 이를 수신여부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거나, 또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진행한 때에는 별도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0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,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 (회의의 종류)

회의는 연 1 회의 정기위원회와 안전에 따른 임시위원회를 병행하여 운영한다.

제12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.
 - ESG 전략과 실행 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ESG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- 중요 ESG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및 의사결정 필요 사항
 - 기타 ESG 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
 -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정기/수시 진행사항
 - ESG 관련 이슈 발생 시 관련 사항
 - 회사의 반부패, 안전/보건, 하도급 등을 포함한 준법 경영체계 및 활동 심의 사항
 -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건의 또는 정책에 관한 사항
 -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ESG 관련 사항
- ③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따르거나,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 안전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13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5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- ①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사무국은 원활한 운영과 자료 수집 등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6조 (간사)

-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제17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